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14드단203263(본소) 이혼 등
2014드단23009(반소)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이AA (*****-2*****)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안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장BB (*****-1*****)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인 담당변호사

변 론 종 결 2015. 8. 27.

판 결 선 고 2015. 10. 22.

주 문

1.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본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1. 5. 29. 결혼식을 올리고 2011. 6. 1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2) 원고와 피고는 신혼 초기부터 갈등을 빚었는데, 원고는 피고가 퇴근 후 자주 당구를 치면서 늦게 귀가하고 시댁으로부터 서운한 대접을 받는데다가 세 차례 유산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친정에 자주 가도록 배려를 하

고 애정표현도 자주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서운한 감정만 표현하였으며 피고의 월급을 전액 관리하면서도 제대로 저축을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다.

3) 원고는 2014. 6. 20.경 친정으로 간 후 피고가 2014. 6. 30.부터 약 한 달 정도 태국 출장을 다녀오는 기간에도 피고와 연락을 피하면서 현재까지 별거상태에 있다.

4) 피고가 태국 출장에서 돌아온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여 쌍방 협의 이혼 여부에 대해 의논을 하였다.

5)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자 2014. 9. 15.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도 2014. 11. 7.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가사 조사관 작성의 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각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로서 모두 이혼을 구하고 있는 점, 원·피고 모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이고, 파탄의 책임은 혼인기간 중 갈등과 불만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는 등으로 불신과 갈등을 키운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 및 피고의 잘못은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다. 각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각자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본소

및 반소로 각 위자료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이 상호 대등한 정도로 있는 이상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 상대방의 책임이 더 중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와 피고의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2.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아버지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돕는 등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 130,000,000원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살피건대, 피고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 130,000,000원 전액을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조달한 사실에 관하여는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고, 혼인기간 중 원고가 피고 아버지 회사에 출근한 기간도 길지 않으며, 원고는 피고의 월급 전액을 관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명의의 전세금반환채권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류기인